

장비 거래 기본 계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에 본사를 둔 ㈜하이닉스반도체 (이하 "갑"이라 한다)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 에 본사를 둔 ㈜아 토 (이하 "을" 이라 한다)는 구매(공급)및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과 "갑"에게 별첨에 명시된 장비(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매(공급) 및 설치에 대하여 "갑", "을"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시스템"이라 함은 별첨#1에 명시된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품목을 칭한다.
- 2. "품목"이라 함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장치,부품,부착물 및 소프트웨어를 칭한다.

제 3 조 (공급 조건)

- 1. 계약번호 : 4500012102
- 2. 품명: HANA HP300 PE-TEOS 장비
- 3. 수량: 1式
- 4. 납기: 2006년 1월 30일 (입고시점 기준)
- ※ SET-UP 및 시운전은 입고후 "갑"과 별도 협의한다.

제 4 조 (대금 지불)

- 1. 총 계약금 : 칠억삼천오백오십만원정 (₩735,500,000) (부가세 별도)
- 2. "갑"은 상기 1항의 계약금액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갑"의 대금지불 기준에 의거하여 "을"에게 지불한다.
 - 1) DEMO완료후(2006년1월30일) 즉시 지급 (100%)
 - : 계약 체결 및 계약 물품의 납품, 입고 후,

제 5 조 (납품 장소)

"갑"이 지정하는 장소 : ㈜하이닉스반도체 이천 M10입고후, 조립. 납품 장소까지의 운임 등 기타 소요비용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6 조 (계약 이행 보증)

-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이행 보증보험(계약금액 10%)에 가입하고 증빙 서류(보증보험 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 2. "을"은 선급 계약금에 대한 지급계약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증빙서류(보증보험 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 7 조 (지체 상금)

1.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대금으로 지체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동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단, 지채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을"은 납기 지연으로 "갑"에게 생산실적 미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전항의 지체 대금 이외에 별도로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A/S용 부품 공급)

- 1. "을"은 "갑"에게 공급한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A/S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검수 완료 일로부터 (12)개월간 A/S용 부품을 "갑"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A/S 부품 공급에도 불구하고 "을"은 본 계약 제 10조에 의거한 하자보증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
- 2. A/S용 부품 가격,물량,공급 조건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3. "을"은 A/S용 부품 공급과는 별도로 자신의 비용으로 "갑"의 직원 및 "갑"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쌍방이 합의한 장소와 일정으로 "시스템"의 A/S 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제 9 조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 1. "을"은 "갑"의 직원에 대해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을"의 정기/비정기 교육 훈련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시스템" 사용상 필요한 MANUAL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따른 제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 2. "을"은 하시라도 자신의 비용으로 "갑"에게 공급한 "시스템"에 대한, 향후 성능 향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 지원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갑"의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기술 지원을 행해야 한다.

제 10 조 (하자 보증)

- 1. "을"은 본 계약 물품 납품후 검수 합격일로부터 (12)개월간 (이하 "하자 보증 기간"이라한다) "시스템" 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설계상 제조 공정상 하자가 없고, "갑"에 의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한문란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 2. "을"은 동 하자 보증 기간 동안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단,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시스템"의 개조,변경 등을 행한 결과 발생하거나 하자 보증기간을 경과하여 발생한 문제점인 경우, "을"은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되,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3. "을"은 위 1항 및 2항의 보증 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증 기간 만료 시 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총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자 보증 증권을 "시스템" 승인서 교부일 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제 11 조 (지적 재산권)

- 1. "을"은 "시스템"이 제 3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 2. "갑"의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행위가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당해 제 3자가 소송 및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즉시 "을"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동 소송 또는 분쟁으로 "갑"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갑"의 사양에 따라 "을"이 제작, 납품한 "시스템"의 경우,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제 3자에게 제작, 납품할 수 없다.

제 12 조 (계약의 기간 및 해지)

1.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2. "갑"과 "을"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후 동기간내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을"이 본 계약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상대방이 본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2) "을"이 "시스템"을 공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제 3조의 총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타방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중요 부분의 영업 양도 또는 합병을 한 경우.
 - 2) 타방 당사자가 발행, 지급 보증 또는 인수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되는 경우.
 - 3) 타방 당사자 또는 타방 당사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 정리, 화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 4) 본 계약 제 15조의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제 13 조 (비밀 유지)

"갑"은 "을"의 직원이 "시스템"의 설치, 수리, 지원 등의 목적으로 "시스템" 설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을" 및 "을"의 직원은 이로 인하여 지득하거나 본 계약을 통해 지득하게 되는 "갑"의 대외비 기술 자료, 영업 비밀 또는 기타 업무상 기밀 사항 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및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2년간 존속한다.

제 14 조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장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제 15 조 (불가항력)

어느 일방이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화재, 폭발, 전쟁, 정부의 조치, 국제 분쟁 기타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동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한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상 관례에 따라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2.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는 서울지방법원 본원 또는 "을"의 본사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제 17 조 (기타 사항)

- 1. 관련 법령이나 판결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계약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2. 본 계약에 첨부된 별첨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수권한 하기 대리인으로 하여금 각각 서명 날인하게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6년 01월 03일

공급받는자 ("갑")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업체명: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자: 우 의

서 명: ___

공급자("을")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

업체명: ㈜아 토

대표자: 문상영

서 명: ____

